

인증 대상별 인증심의위원회의 전문분야 및 구성방법(제4조제4항 관련)

인증 대상			인증심의위원회의 전문분야 및 구성방법
지역			도시·군계획, 건축, 토목, 조경, 교통,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분야의 7명 이상
개별 시설	제2조 제1호가목	공원	조경, 토목,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분야의 5명 이상
		공원 외의 시설	건축,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분야의 5명 이상
	제2조 제1호나목	교통수단	교통, 토목,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분야의 5명 이상
		여객시설	건축, 교통,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분야의 5명 이상
		도로	토목, 교통, 도시·군계획,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분야의 5명 이상

※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은 인증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거나 전문분야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